
'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FAQ

2026. 4. 1.

관계기관 합동

목 차

[I. 대책 일반]

1.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은? 1

[II. 가계부채 총량관리 관련]

1. 금번 대책에 DSR 확대, 자본규제 강화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? 2
2. 월별·분기별 목표 미이행시에도 페널티 부여되는지? 3
3. 새마을 금고는 관리목표 “+0원”을 부여하였는데 작년도 관리 실적에 비해 페널티가 약한 것 아닌지? 3

[III.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]

1. 다주택자인 개인·임대사업자의 세부 판단기준은? 4
2. 다주택자 예외 사유에 대한 세부 심사 방법은? 5
3. 증여받은 주택은 예외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? 7
4. 중도금·이주비 대출도 만기연장 제한되는지? 7
5. 법인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HOMS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? 7
6.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허용범위의 구체적인 적용례는? 8

- 7. 토지거래허가제도 보완의 효과는? 9
- 8. 발표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계약종료일이 2년 뒤('28.4.1일)인 경우,
2년간 대출만기연장을 허용하는 것인지? 10
- 9.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이
유효하게 남아있는 경우에 대한 적용례는? 11
- 10. 만기연장 예외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 대한 적용방법은? .. 12
- 11.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허용되는 경우 심사를 위해 금융회사가
징구할 수 있는 서류는? 12
- 12. 다주택자 보유 주택 수 산정시 예외사유는 세제, 대출규제 등
기존 다주택자 규제에도 적용되는지? 13
- 13. 임대사업자가 비주택 임대사업(예: 상가)을 위해 수도권·규제지역
APT를 담보로 하여 취급한 주담대도 규제대상인지? ... 13
- 14. 주담대시 전입신고의무 이행시점은? 14

[IV. 대출규제 위반 집중점검]

- 1. 용도외유용 적발 시 금융권의 '모든 대출'이 제한되는데, 이때
'모든 대출'의 범위는? 16
- 2. 가계대출 약정 위반 점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? ... 16

1. 대책 일반

1.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은?

-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*,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유예 종료 기한 임박(5.9일)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 상승세가 다소 둔화**

* 은행자체 주담대 증감 추이 : (9월)+1.4 (10월)+1.0 (11월) Δ 0.02 (12월) Δ 1.4 (26.1월) Δ 1.7 (2월) Δ 1.1

** 서울 주별 APT가격 변동률(% , 전주 대비)

(2월1주)+0.22 (2주)+0.15 (3주)+0.11 (4주)+0.09 (3월1주)+0.08 (2주)+0.05 (3주)+0.06

- 다만,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 수준*, 5.9일 이후 매물 잠김 우려, 대출규제 우회 행위 증가** 등 잠재적 불안요인 상존

* 가계부채/GDP 비율 주요국 비교('25.3Q, %) : (韓)89.4 (美)68.0 (日)61.1 (中)59.0

** 점검건수 대비 적발건수: ('19.1.~'21.6.) 268건/29.6만건 ('25.7~12.) 127건/2만건

- 이에 관계기관 합동 「'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」을 마련하여 다주택자 매물 출회 적극 유도

- ①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*, 중장기 로드맵 마련** 등을 통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노력 지속

* ('25년 관리 실적) '24년말 대비 1.7% 증가 → ('26년 목표) 1.5% 증가

**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'30년까지 80% 수준으로 하향 ('25년 88.6%)

- ② 다주택자(개인, 임대사업자)의 수도권·규제지역내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을 불허하되, 예외적으로만 허용(예 : 임차인이 있는 경우)

- 다만, 토허제상 실거주 의무* 등으로 주택 매도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여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**

* 토지거래허가 취득 후 매수자가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할 의무

**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(임차중인 경우)을 '26.12.31일까지 허가신청하여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취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유예

- ③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('21년 이후 취급분부터 점검) 및 제재수준 대폭 강화*

* (현행) 해당 금융기관의 신규사업자 대출을 1년간 금지(1차 적발시)

→ (개선) 쏠 금융권의 모든 대출(가계대출, 사업자대출)을 3년간 금지(1차 적발시)

※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방안도 추후 발표 추진

II. 가계부채 총량관리 관련

1. 금번 대책에 DSR 확대, 자본규제 강화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?

- 금융위원회는 '26년도 업무보고('25.12.19일) 등을 통해 DSR 적용대상을 확대하고, 주담대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본적립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
 - 현재 DSR 적용대상 확대시 차주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발표
 - '26.4월 이후 주신보 출연료 체계개편에 따라 고액 주담대에 대한 출연료가 인상 되는 바, 동 조치의 효과를 보아가며 추가 자본규제 강화 방안 등 검토

< '26년도 업무보고 中 >

- DSR 중심*으로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하는 여신관리체계 고도화(연중)
* DSR 적용대상 확대, 소득심사 강화방안 등 검토
- 주신보 출연요율 체계 개편('26.4월)*, 고액 주담대 자본적립 부담 강화('26上) 등 고액 주담대 관리 강화
* 現) 대출종류별(고정·변동금리 등) 부과 → 改) 대출금액별 부과

2. 월별·분기별 목표 미이행시에도 페널티 부여되는지?

- 그간 연간 관리목표를 기준으로 페널티를 부여함에 따라 연말 금융권의 관리 강화 과정에서 대출절벽 우려 등이 제기
 - 이에 월별·분기별 관리목표를 수립하여 연중 대출이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
- 월별·분기별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익월·다음 분기 목표를 조정하여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

3. 새마을 금고는 관리목표 “+0원” 을 부여하였는데 작년도 관리실적에 비해 페널티가 약한 것 아닌지?

- 새마을금고의 작년도 가계대출 초과분을 모두 차감할 경우, 현실적으로 금년도 새마을금고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 등을 감안하였음
 - * ('25년도 관리목표)+1.2조원, ('25년도 관리 실적)+5.3조원 → 430.6% 초과
 - 다만, 올해 반영하지 못한 차감분은 '27년도 관리목표 설정시 추가로 반영할 예정임

Ⅲ.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

1. 다주택자인 개인·임대사업자의 세부 판단기준은?

- 임대사업자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「세법」상 임대사업자*로서, 주된 영업이 임대업인 경우**를 의미

*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상 등록 임대사업자를 포함

** 주된 영업에 대한 판단기준은 매출액 기준 등 금융회사 내부 판단기준 활용

- 개인과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, 세대기준*으로 다주택자 판단

* 각 업권법 감독규정 상 세대기준

2. 다주택자 예외 사유에 대한 세부 심사 방법은?

□ 차주가 금융회사에게 증빙서류 제출

○ 사례별 필요 증빙서류 예시는 다음과 같음

예외 인정	증빙서류
매도계약이 既 체결된 주택 ① *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 포함하되, 추후 실제 토지거래허가 여부 추가 검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매매계약서 등 ■ 토지거래허가 관련 민원접수증 및 토지거래허가서 등
② 어린이집 (영유아보육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어린이집 인가증 등
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③ * 단, 관할 지자체에서 「조특법」상 특례 인정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으로 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자체 발급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확인 날인(조특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한하여 날인 중) 등
④ 민간건설임대주택 (민간임대주택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
⑤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주택 취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상속 등본, 법원 발급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결정문 등
행안부장관이 고시¹⁾하는 인구감소(관심)지역 소재 주택 ⑥ * 단, 취득 시 기준시가가 (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) 9억원, (그 외) 4억원 이하이면서, 수도권(접경지역 ²⁾ 인 인구감소지역 제외) 또는 광역시(군 제외)에 소재하지 않는 주택으로 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등기부등본 (집주소 확인) ■ 매매계약서 (취득시점 확인) <p>※ 취득시점의 기준시가는 공개되어 있음</p>
⑦ 문화재³⁾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가지정문화유산대장 ■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등
⑧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(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개별 판단)	

1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고시

2)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

3)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정문화유산,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

참 고

인구감소(관심)지역, 접경지역 현황 ('26.4.1일 기준)

행정구역	인구감소지역(총 89개)	인구감소관심지역(총 18개)	접경지역(총 17개)
부산	동구, 서구, 영도구(3개)	금정구, 중구(2개)	-
대구	남구, 서구, 군위군(3개)	-	-
인천	강화군, 옹진군(2개)	동구(1개)	강화군, 옹진군(2개)
광주	-	동구(1개)	-
대전	-	대덕구, 동구, 중구(3개)	-
경기	가평군, 연천군(2개)	동두천시, 포천시(2개)	김포시, 파주시, 연천군, 고양시, 양주시, 동두천시, 포천시, 가평군(8개)
강원	고성군, 삼척시, 양구군, 양양군, 영월군, 정선군, 철원군, 태백시, 평창군, 홍천군, 화천군, 횡성군(12개)	강릉시, 동해시, 속초시, 인제군(4개)	철원군, 화천군, 양구군, 인제군, 고성군, 춘천시, 속초시(7개)
충북	괴산군, 단양군, 보은군, 영동군, 옥천군, 제천시(6개)	-	-
충남	공주시, 금산군, 논산시, 보령시, 부여군, 서천군, 예산군, 청양군, 태안군(9개)	-	-
전북	고창군, 김제시, 남원시, 무주군, 부안군, 순창군, 임실군, 장수군, 정읍시, 진안군(10개)	익산시(1개)	-
전남	강진군, 고흥군, 곡성군, 구례군, 담양군, 보성군, 신안군, 영광군, 영암군, 완도군, 장성군, 장흥군, 진도군, 함평군, 해남군, 화순군(16개)	-	-
경북	고령군, 문경시, 봉화군, 상주시, 성주군, 안동시, 영덕군, 영양군, 영주시, 영천시, 울릉군, 울진군, 의성군, 청도군, 청송군(15개)	경주시, 김천시(2개)	-
경남	거창군, 고성군, 남해군, 밀양시, 산청군, 의령군, 창녕군, 하동군, 함안군, 함양군, 합천군(11개)	-	-

3. 증여받은 주택은 예외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?

- 증여의 경우, 주택 취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 등을 감안하여 예외 인정 대상에서 제외

4. 중도금·이주비 대출도 만기연장 제한되는지?

- 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,
 - 금번 만기연장 제한 대상에서 제외

5. 법인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HOMS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?

- 만기연장 심사 시 해당 법인차주가 자산보유내역서, 세무자료 (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) 등을 통해 다주택자가 아님을 입증
 - 이와 함께, 만기연장 시 다주택자가 아님을 금융기관에 확약할 필요 (적발시 즉각적인 기한이익상실 등 불이익 조치)

6.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허용범위의 구체적인 적용례는?

- ① (원칙) 발표일('26.4.1일)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 허용
- ② (예외) 주택매도 곤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표일 후('26.4.2일~)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도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

① 대책 시행일 전일('26.4.16일)까지 이루어지는 묵시적 갱신

- 대책 발표 후 대책 내용 등을 인지하지 못해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를 못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(4.2일~4.16일) 부여
- * (4.17일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) 유예기간(4.2~4.16일) 중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 표명 → 임대차계약종료일인 6.16일까지 주택 매도 가능

② 발표일('26.4.1일)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('26.7.31일)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

- 주택매도 가능기간이 2개월 미만*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거절이 사실상 어려워 예외 인정
- *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수인이 **임대차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** 주택 거래 후 청구권 사용 거절의 의사표명 필요
- * (임대차계약종료일이 '26.7.31일) '26.5.31일까지 주택매도 완료해야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

구 분	대출 만기연장 허용 범위
① 발표일('26.4.1일)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	※ 가계약 미인정
① 기존 임차인과의 연장계약 (묵시적 갱신 포함)	연장계약의 종료일
② 후속 임차인과의 신규계약	신규계약의 종료일
② 발표일 후('26.4.2일 ~) 갱신된 임대차계약	※ 가계약 미인정
① 대책 시행일 전일('26.4.16일)까지 이루어지는 묵시적 갱신	
② 발표일('26.4.1일)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('26.7.31일) 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	갱신계약의 종료일
※ ①·② 외의 경우	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(갱신계약의 종료일이 아님)

7. 토지거래허가제도 보완의 효과는?

□ (현행) 토허구역 내 주택취득시 매수자가 4개월 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4개월 전부터 주택 거래 가능

➔ 즉각적인 매물 출회가 지연되는 문제 발생

□ (보완조치)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'26.12.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

※ 주담대시 전입신고의무도 함께 완화

➔ 즉각적인 매물 출회 가능

현 행	보완조치 시행시
<p>① 발표일('26.4.1일)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'26.10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6.6월(임대차계약 종료 4개월전)부터 거래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6.4월(보완조치 시행시)부터 거래 가능
<p>② 발표일('26.4.1일)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'27.12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7.8월(임대차계약 종료 4개월전)부터 거래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6.4월(보완조치 시행시)부터 '26.12.31일까지 거래 가능 ▪ '27.8월(임대차계약 종료 4개월전)부터 거래 가능

8. 발표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계약종료일이 2년 뒤('28.4.1일)인 경우, 2년간 대출만기연장을 허용하는 것인지?

발표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이 2년 뒤 ('28.4.1일)여도 통상적 만기연장주기(1년)에 맞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만기연장 주기도래시 추후 재심사

○ 대출만기일이 '26.9.1일이라고 가정시, '27.9.1일까지 1차 연장

○ 이후, 임대차계약의 유효성(임차인 퇴거 여부 등)을 재심사하여 '28.4.1일까지 2차 연장

※ 다른 예외사유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

다만, 금융회사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 신용도, 담보가치 변화 등에 따라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

9.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경우에 대한 적용례는?

- ① (원칙)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 허용
- ② (예외) 주택매도 곤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도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

① 대책 시행일 전일('26.4.16일)까지 이루어지는 묵시적 갱신

- 대책 발표 후 대책 내용 등을 인지하지 못해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를 못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(4.2일~4.16일) 부여
- * (예) 의무임대기간 종료일('26.4.1일) 기준 유효한 임대차계약종료일이 '26.6.1일인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'26.4.2일 이루어짐

②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

- 주택매도 가능기간이 2개월 미만*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거절이 사실상 어려워 예외 인정
- *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수인이 **임대차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**까지 주택 거래 후 청구권 사용 거절의 의사표명 필요

구 분	대출만기 연장 허용 범위
①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	※ 가계약 미인정
① 기존 임차인과의 연장계약 (묵시적 갱신 포함)	연장된 계약의 종료일
② 후속 임차인과의 신규계약	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(신규계약의 종료일이 아님) * 다만 발표일('26.4.1일)까지 체결된 계약은 신규계약의 종료일
② 의무임대기간종료일 후 체결된 임대차계약	※ 가계약 미인정
① 대책 시행일 전일('26.4.16일)까지 이루어지는 묵시적 갱신	갱신계약의 종료일
② 의무임대기간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	
※ ①·② 외의 경우	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(갱신계약의 종료일이 아님)

10. 만기연장 예외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 대한 적용방법은?

만기연장 예외 사유 중복시, 보다 늦은 시점으로 적용*

* (예) 법령상 의무 종료일: '28.4.1일, 임대차계약 종료일: '28.6.31일인 경우
→ '28.6.31일까지 만기연장 허용

11.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허용되는 경우 심사를 위해 금융회사가 징구할 수 있는 서류는?

차주가 금융회사에게 증빙서류 제출

○ 사례별 필요 증빙서류 예시는 다음과 같음

예외 사유	증빙서류
① 임차인이 있는 경우	■ 임대차계약서 등
② 등록임대사업자	■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
법령상 의무 ③ - 도정법상 전매제한 - 주택법상 실거주의무	■ 관련 증빙자료 - 소유권 이전 고시문 등 - 주민등록초본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등
④ 만기연장 既 통보	■ 통보사실 증빙자료
⑤ 민간임대리츠, 공익법인	■ 법인등록증 등
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(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개별 판단)	

12. 다주택자 보유 주택 수 산정시 예외사유는 세제, 대출규제 등 기존 다주택자 규제에도 적용되는지?

- 다주택자 보유 주택수 산정시 예외 사유는 금번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방안에 한정하여 적용

13. 임대사업자가 비주택 임대사업(예: 상가)을 위해 수도권·규제지역 APT를 담보로 하여 취급한 주담대도 규제대상인지?

- 차주가 다주택자인 경우 규제대상임

14. 주담대시 전입신고의무 이행시점은?

□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'26.12.31일까지 매수*하는 경우,

* '26.12.31일까지 매매계약서 작성 (토허구역은 '26.12.31일까지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)

○ “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” 또는 “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”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신고의무를 유예

참 고

주택담보대출시 전입의무 유예 방안

- **(현행)** 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구입목적 주담대시 “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” 이내 전입의무 (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(25.6.27일))
- **(개선)** 아래 요건 충족시 “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” 또는 “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”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

요건	내 용	비 고
매도인	① 주택 매도인이 <u>다주택자</u> * 매매계약체결일 기준 매도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 (보유주택의 소재지와 무관)	· ①~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매매거래에 한하여 주담대 전입의무 유예 · (①③ 관련) 금융회사가 주택매도인의 개인정보를 활용(여신심사)하기 위해 <u>주택매도인의 정보제공·활용 동의 징구 이후 매도인 요건 심사</u> * 다주택자 여부 (재산세 납부 증명서, 보유주택의 등기부 등본, 부동산 소유 현황 확인서 등) ** 수도권·규제지역 APT 담보 만기일시 상환 주담대 보유 여부 (대출약정서 등)
매수인	② 주택 매수인(세대기준)이 <u>“대출신청일” 기준 무주택자</u>	
대상	③ 수도권·규제지역 소재 APT 로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<u>만기 일시상환 주담대가 존재하는 경우</u>	
주택 거래 시점	④ ‘26.12.31일’까지 <u>매매계약 체결</u> (가계약은 인정하지 않음) * 단, 토허구역은 관할 지자체에 ‘26.12.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접수	
전입 시기	⑤ 전입의무를 ^{현행}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유예 <u>임대차계약 종료일*로부터 1개월</u>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이행 * (원칙) 발표일(‘26.4.1일)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(예외) 다음의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종료일 1) 대책 시행일 전일(‘26.4.2일~4.16일)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2) 발표일(‘26.4.1일)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(‘26.7.31일)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	

※ (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의무 이행시) 현행과 동일

(임대차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의무 이행시) **①~④** 모두 충족해야 하며, 금융회사는 추가서류 징구 등을 통해 **①~④** 충족여부 확인

IV. 대출규제 위반 집중점검

1. 용도외유용 적발 시 금융권의 '모든 대출'이 제한되는데,
이때 '모든 대출'의 범위는?

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*(개인사업자의 경우)을 모두 포함

* 단, 가계대출 제한은 점검준칙 개정시행 후 신규 대출의 적발 건부터 적용

2. 가계대출 약정 위반 점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?

가계대출 약정 위반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며,

- 기한이익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자체 점검하여 즉각 조치해 나갈 예정